

의안번호	제 45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1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59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1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출생·양육 지원”이란 출생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생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3.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생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임산부 예우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시설(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사용료·관람료·주차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① 도지사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의 개설·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행이 편리한 곳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규모 점포, 병원, 은행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그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임산부의 날) 도지사는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출생·양육 지원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결혼 및 출생·양육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
2. 임신 준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3. 임산부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출생·양육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출산육아수당) ① 도지사는 출생·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에

대하여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신청은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출생아동의 사망·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다자녀카드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자녀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자녀카드 발급, 우수 가맹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임신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도민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임신부 예우 및 출생·양육 친화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신부 예우 및 출생·양육 친화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임신부 예우 및 출생·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3조(출산육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금번 조례 제정안은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도내 임산부 및 출생·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저출생 대응 사업 수행을 위해서 제정이 요구됨
- 본 제정 조례안 조항은 권고 형식의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금액,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이에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 기 봉